「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」 수혜기업 모집 공고

(재)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는 『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』사업을 통한 서천군 및 충남의 해양수산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해양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·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전국의 기업·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3월 31일 (재)충남테크노파크 원장, 서천군수

1. 사업개요

O 사 업 명 :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

○ 지원기간 : 선정통보일로부터 ~ 2021. 11. 30 (연장가능)

○ 사업주관: (재)충남테크노파크, 서천군

○ 지원대상 : 전국 해양수산 전후방 기업 및 관련 기관

※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, 서천군, 충청남도 중 한곳에 소재하고 있거나 5년이내 건립 또는 이전완료 해야함

■ 사업목적

○ 해양바이오 기업의 서천군 및 충청남도 내 유치, 미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

■ 사업내용

| 세부과제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| 해양생물자원(식물, 동물, 미생물, 수자원 등)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효능·성능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시제품화 |
|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 | 해양생물자원(식물, 동물, 미생물, 수자원 등)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 시제품 개발 ※ 핵심 성능(성분, 효능 등)이 규명된 기존 소재 활용 가능 |
|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 개발 | 해양생물자원(식물, 동물, 미생물, 수자원 등) 소재가 활용된 제품의 상품화 공정개발을 통한 시장출시 등 최종 상용화 도출 ※ 기존 해양바이오 소재 및 시장에 미 출시된 시제품 등 활용 가능 |

■ 지원내용

| 내역사업명 | ′21년예산 | 지원 과제수 | 과제당 지원금 | 지원기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| | 1건 이상 | 2억원 이내 | 협약체결일로부터 |
|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 | 8억원 | 1건 이상 | 1억원 이내 | 2021.11.30.까지 |
|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 개발 | | 1건 이상 | 1.5억원 이내 | (연장가 능) |

- ※ 지원금은 정책 방향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됨
- ※ 지원기간은 개발상황에 따라 검토를 통해 연장 가능
- ※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하였거나, 지원 중인 중복과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
- 세부사항 : [붙임1]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
2. 신청자격

■ 단독 참여

○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, 서천군, 충남도로 이전 가능하거나 서천군 또는 충남도에 소재한 해양바이오 전후방기업으로써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

■ 공동 참여

○ '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'와 '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, 서천군, 충남도로 이전 가능하거나 서천군 또는 충남도에 소재한 해양바이오 전후방 기업'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

<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>

- `1.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3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
- 4. 국립,공립 연구기관
- 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6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
- 7.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

3. 신청방법

■ 공고 및 접수기간

○ 공고기간 : 2021. 3. 29.(월) ~ 2021. 4. 16.(금)

○ 접수기간 : 2021. 4. 12.(월) ~ 2021. 4. 16.(금), 18시 까지

■ 신청방법

○ 신청서 접수 :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는 접수 받지 않음

○ 신청서(양식)교부 : 사업계획서 양식, 제출서류 등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ctp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
○ 신청서 제출처 :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(예산)

O 주 소 :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26,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1층

■ 제출서류

| No | 신청서류 | 부수 | 비고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| 신청 공문(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) | 1부 | 필수 |
| 2 | 연구개발계획서 | 10부 (원본1부 사본 9부) | 필수 |
| 3 |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※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| 1부 | 필수 |
| 4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| 1부 | 필수 |
| (5) |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(최근 3년치) | 1부 | 필수 |
| 6 |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| 1부 | 필수 |
| 7 |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※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기업은 필수 | 1부 | 해당시 |
| 8 |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| 1부 | 필수 |
| 9 |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| 1부 | 필수 |
| 10 |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| 1부 | 해당시 |
| 11) | 생산시설(공장), 부설연구소 이전 및 건립 예정 확인서 | 1부 | 필수 |
| 12 |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| 1부 | 필수 |

4. 선정기준 및 절차

■ 선정기준

- 평가점수는 연구계획의 적절성(연구목적의 타당성, 세부수행 계획의 구체성, 선행연구실적 등), 추진체계 및 연구역량의 적합성(연구개발 조직, 인력현황, 전문성 및시설·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등), 연구성과 활용계획(사업화・실용화 가능성, 시장 진입계획 등)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
- 지원 대상기업(기관) 선정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후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(발표평가)하여 최종종합평가점수(우선지원 대상 반영)가 최고점인 신청기관을 선정
 - ※ 단,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
-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(100점 만점)를 산술평균(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)한 점수이며,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우선지원대상을 반영한 점수임
- 우선지원대상 항목
- 충남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및 건립 희망기업 우선 선정

| 순 위 | 지원대상 |
|-----|---|
| 1순위 |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이전 및 건립하기 희망하는 기업 |
| 2순위 | 서천군에 본사, 공장,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|
| 3순위 | 충남도에 본사, 공장,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도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|

- ※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순위 결정
- ※ 최근 5년간 각종 국·도비 지원 실적이 없는 **신규기업*** 지원 시 가점
- * 특정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특혜 및 집중 지원 방지
- * 단, 신규 기업 해당 지원자가 없는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예정
- ※ 지역대표 수산물(해삼, 김 등)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용소재 활용 시 가점
- * 세부 가점 내역은 각 세부사업 RFP 참조

O 평가항목 및 내용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배점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|--|--|
| | ·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잘 이해하고 있는가? | 10 | | | |
| 연구계획 | ·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(연구동향/시장현황/정책동향/선행연구 와의 차별화 등)는 충실하며,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? | 5 | | | |
| (40%) | · 연구개발 목표/내용/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,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? | 15 | | | |
| | · 최종목표 및 연차(단계)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? | 10 | | | |
| 추진체계 | ·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,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? | 10 | | | |
| (20%) | · 세부과제의 역할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? | 10 | | | |
| | ·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? | 10 | | | |
| 연구역량 | ·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? | 10 | | | |
| (30%) | ·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? | | | | |
| 성고 <u>활용</u> 계획 (10%) | │ · 연구개말 성과의 왘용 계획은 석설하게 수립되었는가? | | | | |
| | 합계 | 100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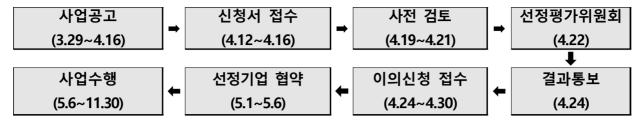
- 사전검토 : 관리기관의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포함 ※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과제수행 적합성 조사(전문가 1~2인 및 간사)
- 평가방법 : 발표평가(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)
 - ※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예정

■ 우선지원대상 가점 항목

| 구분 | 기준 |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본사/공장/연구소 이전 또는 건립 시 신규 고용인원 | 신규고용 1명 1.5점 ※ 가점: 최대10명/최대 15점 | 1.5점~15점 |
| 본사/공장/연구소 이전 또는 건립 시 상주인원 | 상주인원 5명 1점 (이후 1명 추가당 +1점) ※ 가점: 최대15명/최대 11점 | 1점~11점 |

- ※ 가점항목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일 때 적용함
- ※ 신규기업, 지역대표 수산물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용소재 활용 가점은 RFP 참조

■ 선정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■ 이의신청

○ 이의신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<u>중대한 평가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</u> <u>판단 될 경우</u>,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(자유양식)제출 가능

5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 -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※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) 제1항
-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
 -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
 - ※ 협동·공동·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 과제 참여가 가능함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에 따라,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,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. 다만, 동 규정 제2항1~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

<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 제2항의 각호>

- 1. 제6조제4항에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- 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- 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- 4.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
- 5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
-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※ 다만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
- 참여기관(기업)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6. 참여기업 부담기준

■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규정」의 참여기업 민간부담 현금 현물 비율

| 구 분 | 참여기업 부담 기준 |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기업 | 총 연구개발비의 30% 이상 | 총 부담금액의 10% 이상 |
| 중소기업 및 기타 | 총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 | 총 부담금액의 0% 이상 (전체 현물 부담 가능) |

※ 총 연구개발비 = 지원금 + 기업부담금(현물, 현금)

- '대기업'이란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정의
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
※ 개발 완료 후 별도의 기술료 납부 없음

7. 사업설명회 개최

■ 상시 사업설명회 안내

O 일 시 : 2021. 03. 29(월) ~ 04. 16(금) ※ 공고 및 접수기간 내 상시

O 장 소 : (재)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

O 주 소:

-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성공관 웰에이징소재개발지원센터

-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25,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

※ 코로나-19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및 전국 1.5 단계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제한, 국공립시설 이용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개별설명회로 대체

※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내 문의처로 상시 문의 가능

8. 유의사항

■ 유의사항

-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,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중복지원여부, 면담/현장실태조사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 신청 취소함
- O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O 선정기업 후 유의사항

| 항목 | 해당 조건 | 필수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 택 1) | 협약일로 부터 1년이내 부지매입, | |
| 이전 또는 건립 서천군으로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 택 1) 이전 또는 건립 | 3년 이내 착공 협약일로 부터 1년이내 부지매입 | 이전 또는 건립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 |
| 충남도로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 택 1) 이전 또는 건립 | 협약일로 부터 6개월이내 이전 또는 건립 | |

■ 문의처

| 구 분 | 담당기 | પ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전반 및 신청, 충남테크노파크 | | 조범호 주임 | 041-589-0652 |
| 평가 등 문의처 바이오센터 | | jbh77@ctp.or.kr | |
| 자취 그리 씨린 다 어린 지 | 서천군청 투자유치과 | 나정표 | 041-950-4012 |
|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, 서천군에 | | 주무관 | jeongpyo0517@korea.kr |
| 본사/연구소/생산시설 이전 및 건립 문의처 | | 김성겸 | 041-950-4234 |
| | | 주무관 | toughkim22@korea.kr |

붙임 1

해양바이오 시제품 및 상품화 공정개발 RFP (안)

1.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

| 사입 | 사업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| | | 지원금 | 2억원 이내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기 | 간 | 2021. 05. ~ 2021.11(7개월) | | | 관 연구기관 | 제한 없음 | | |
| 사 목 | 업 표 | ○ 해양생물자원(식물·동물·미생물·수자원 등)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(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, 효능성분)을 지닌 전략소재 및 시제품 개발 | | | | | | |
| 사내 | 업 용 | O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- 효능성분 규몇 및 분석법 개발 - 원료의 규격화(시기별·부위별·원산지별 비교분석, 기원, 국내외 허가 및 상용화 사례, 유효성자료, 지표성분, 효능성분, 분석법, 유해성 등) O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(설정근거, 평가기준 등) 원료 규격화 1건 이상 지표성분/효능성분 및 분석법) 원료 규격서(미생물, 중금속함량, 지표성분/효능성분 및 분석법) 효능입증 1건 효능시험 완료 (선택지표) SCI논문/ 특허 1건 이상 고용창출(신규채용) SCI 논문 또는 특허 고용계약서 지원금의 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판매액 3% 이상 사업화 매출액 지원금의 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판매액 (판매원장 또는 세금계산서) | | | | | | |
| 지 조 | 원 건 | O 대량확보가 가능한 원물 대상 O 선행연구결과 제시 및 대량확보 가능성 제시 | | | | | | |
| 지 분 | 원 야 | O 기능성 식품, 기능성 화장품, 의료기기(적용소재) 활용 대상 | | | | | | |
| 기 | 타 | O 규격화된 원료의 정보는 생물자원관"지정된 DE *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O(가점사항) 지역대표 수 | 3에 업 <u>:</u> · 관리 | 로드 및 | 해야함 이용 등에 관 | 한 법률 제17조 제1항 | | |

2.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

| 사업 | 사업명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 | | 발 | 지원금 | | 1억 이내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|--|
| 기 | 간 | 2021. 05. ~ 2021.11(7개 | 월) | 주관 | 연구기관 | 제한 없음 | | |
| 사 목 | 업 표 | ○ 해양생물자원(식물·동물·미생물·수자원 등)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 시제품 개발 | | | | | | |
| 사내 | 전 용 | ○ 해양바이오 산업화 시제품 개발 - 효능성분 규몇 및 분석법 개발 - 핵심 성능(성분, 효능 등)이 규명된 기존 소재 활용 가능 ○ 성과지표 목표치 (설정근거, 평가기준 등) 안정성 평가 1건 공인시험성적서 제형 개발 1건 인체적용시험용 시제품 (선택지표) SCI논문/ 특허 1건 이상 SCI 논문 또는 특허 고용창출(신규채용) 1명/년 고용계약서 시업화 매출액 지원금의 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판매액 3% 이상 (판매원장 또는 세금계산서) | | | | | | |
| 지 조 | 원 건 | O 대량확보가 가능한 원물 대상 O 선행연구결과 제시 및 대량확보 가능성 제시 | | | | | | |
| 지 분 | 원 야 | O 기능성 식품, 기능성 화장품, 의료기기(적용소재) 활용 대상 | | | | | | |
| 기 | 타 | O (가점사항) 지역대표 수 | - 산물 5 | 빌 자원 | 원관 유용소 | 재 활용 : 1점 | | |

3.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개발

| 사업 | 사업명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개발 | | 개 발 | 지원금 | | 1억5천만원 이내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기 | 간 | 2021. 05. ~ 2021.11(7개월) | | 주된 | 관 연구기관 | 제한 없음 | | |
| 사 목 | 업 표 | ○ 해양생물자원(식물·동물·미생물·수자원 등) 소재가 활용된 제품의 상품화 공정 개발을 통한 시장 출시 등 최종 상용화 실현 | | | | | | |
| | | ○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 | 정개발 | • | | | | |
| | | - 기존 공정대비 단축 : | 및 경비 | 적 2 | 각되 상품화 : | 공정 개발 | | |
| | | | ~ 0 1 | <u> </u> | O I · | | | |
| | | ○ 성과지표 | | | | | | |
| | | 417171 | | -, | | 비고 | | |
| | | 성과지표 | 목표치 | | (설정근기 | H, 평가기준 등) | | |
| | | 원료 표준화 | 1건 | | | 설정 및 분석법, | | |
| 사 | 업 | | | 원료규격 공인성적서 | | | | |
| 내 | _ 용 | 원료 제조공정 최적화 | 1건 | |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결과 | | | |
| 41 | 0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및 공정최적화 등 | | |
| | | (선택지표) SCI논문/ 특허 | 1건 0 | | | 문 또는 특허 | | |
| | | 고용창출(신규채용) | 1명/년 | | | 용계약서 | | |
| | | 사업화 매출액 | 지원금 | 금의 | 공정개발 직 | 덕용 제품의 판매액 | | |
| | | - 사립와 매물렉 | 3% 0 | l상 | (판매원장 | 또는 세금계산서) | | |
| | | | ı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지 | 원 | | | _ • | | | | |
| 조 | _ 건 | O 경제성 제고 등 상품회 | · 가능 | 조건 | 제시 | | | |
| | <u>1</u> _' | | | | | | | |
| -1 | OI. | | | | | | | |
| 지 | 원 | 년 │ . │○ 기능성 식품, 기능성 화장품, 의료기기(적용소재) 활용 대상 | | | | | | |
| 분 | 야 | 0; 0 700 70, 700 400, 747/(702/11/20 110)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기 | 타 | O (가점사항) 지역대표 수 | 산물 5 | 및 자 | 원관 유용소 | 재 활용 : 1점 | | |
| | |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| | | | | | |